거래자인가, 투자자인가? 싱가포르 세법상의 문제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싱가포르에는 자본이득세가 없으므로, 처분이익이 자본적 성격인지 수익적 성격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 자체가 결정됩니다. 1947년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47)은 s. 10(1)(a)에 따라 영업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s. 10(1)(g)에 따라 그 밖의 소득적 성격의 이익에 과세합니다. 자본 계정으로 보유한 투자 자산의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1] 싱가포르 국세청(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RAS)은 2020년 4월 17일 처음 발표한 디지털 토큰의 소득세 처리에 관한 e-Tax Guide에서 가상자산에 영업의 징표를 적용합니다.[2] 그 징표는 익숙한 보통법상의 목록입니다. 자산의 성격, 보유 기간, 거래 빈도, 부수적 작업, 실현 당시의 상황, 동기, 자금 조달 방법입니다.

싱가포르의 분석은 세 가지 점에서 스위스와 다릅니다. 수치로 된 안전항이 없습니다. 이 분석은 회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스위스에서는 회사가 성격과 관계없이 모든 이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Section 10L은 다국적 그룹 소속 법인이 싱가포르에서 수령한 해외 자산 매각이익을, 그 법인이 싱가포르에 적절한 경제적 실체를 갖추지 않는 한 소득으로 취급합니다. 해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보유한 지주회사가 영향을 받습니다.[3]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질문의 순서

1. 납세자를 특정합니다. 개인의 경우 영업의 징표는 개인 보유분에 적용됩니다. 회사의 경우에는 추가로 회사의 목적과 활동상 디지털 자산 거래가 그 회사의 사업인지 묻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이익은 수익적 성격입니다.
2. 해당 연도의 보유 패턴에 징표를 적용합니다. 잦은 거래, 짧은 보유, 차입 자금,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영업을 가리킵니다. 장기 보유, 적은 거래, 잉여 자금에 의한 매수는 투자를 가리킵니다.
3. 소득 수령분을 구분합니다. 스테이킹 보상, 사업 과정에서 받은 채굴 소득, 용역의 대가로 받은 에어드롭,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토큰은 수령 시점에 소득입니다. IRAS는 아무 대가 없이 받은 에어드롭을 수령인이 토큰을 거래하는 자가 아닌 한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취급합니다.[4]
4. 다국적 그룹 소속 법인의 경우 Section 10L을 검토합니다. 처분된 자산이 해외 자산인지, 이익이 싱가포르에서 수령되었는지, 법인이 경제적 실체 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앞의 두 질문의 답이 「예」이고 세 번째가 「아니요」라면, 그 이익은 자본적 성격이더라도 과세됩니다.
5. 속지주의와 송금 규정을 확인합니다. 개인의 해외 원천 소득은 싱가포르 세금이 면제됩니다. 회사의 해외 원천 소득은 송금 시 과세되며, s. 13(8)의 면제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5]
6. 취득 시점의 의도를 문서화합니다. 투자 의도를 기록한 이사회 의사록, 활발한 거래를 금지하는 트레저리 정책, 장기 보유 지갑과 운영 지갑의 분리가 IRAS가 찾는 증거입니다.

지표	투자자(비과세)	거래자(17% 법인세율 또는 개인 누진세율로 과세)
빈도	연간 소수의 거래	매일 또는 매주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지표	투자자(비과세)	거래자(17% 법인세율 또는 개인 누진 세율로 과세)
보유	수년	며칠에서 몇 개월
자금 조달	잉여 자금	차입
조직	수동적	시스템, 직원, 시장조성
의도의 증거	의사록, 정책, 분리된 지갑	거래 사업으로서의 마케팅
다국적기업 그룹 소속 법인	Section 10L 실체 요건 충족 필요	어느 경우든 영업소득

국경 간 관점

연도 중에 추크에서 싱가포르로 이주하는 설립자는 같은 연도에 대해 두 체계 모두의 심사를 받습니다. 스위스는 거주 기간에 과세하고 그 기간에 회람 제36호를 적용합니다. 싱가포르는 거주 개시일부터 영업의 징표를 적용합니다. 스위스 기간에 이루어진 직업적 성격의 처분은 스위스에서 자영업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같은 처분이 싱가포르 기간에 이루어지면, 보유분이 자본적 성격인 경우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 포지션의 처분 시기를 싱가포르 기간으로, 활발한 거래의 중단 시기를 스위스 기간으로 맞추는 것은, 이주가 실질적인 경우 두 세무당국 모두가 인정하는 정당한 계획입니다. 거주지 판정은 제P편 제I장에서 검토합니다.

주

1. Income Tax Act 1947, s. 10(1)(a) 및 (g); 제M편 제I장 및 제II장 참조. ↩
2. IRAS e-Tax Guide, Income Tax Treatment of Digital Tokens, 초판 2020년 4월 17일, 개정판; 제M편 제I장 참조.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3. Income Tax Act 1947, s. 10L, Income Tax (Amendment) Act 2023에 의해 신설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M편 제II장 참조. ↩
4. IRAS e-Tax Guide, Income Tax Treatment of Digital Tokens, 제5절~제7절; 제M편 제I장 참조. ↩
5. Income Tax Act 1947, s. 10(25) 및 s. 13(8); 제M편 제II장 참조.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